



#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프로 스포츠 훈련 시설에 대한 임시 지침

## 이 문서를 읽고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 년 6 월 15 일 월요일 기준

### 목적

본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프로 스포츠 훈련 시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rofessional Sports Training Faciliti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또는 "코로나 19 프로 스포츠 훈련 시설 임시 지침"은 프로 스포츠팀의 소유자 및 매니저와 그들의 훈련 시설/훈련 장소에 시설이 재개 또는 운영을 지속하며 코로나 19 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돕는 예방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침은 최소 요구사항이며 고용주는 추가 예방조치나 제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뉴욕주 재개의 2 단계 시점에 가장 잘 알려진 공중보건 관행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지침의 기반이 되는 문서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자주 변경됩니다.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ies)는 스포츠 훈련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갱신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거나 모든 관리 및/또는 현장 안전 계획(Site Safety Plan)에 이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배경

2020 년 3 월 7 일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주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 호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19 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경우 개인 사이에 최소 6 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 년 3 월 20 일에 Cuomo 주지사는 모든 비필수 사업체에 사무실 내 직원 기능을 종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202.6 호를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ESD) 지침에 따라 규정된 필수 사업체는 대면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지시를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가능한 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았습니다.

2020 년 4 월 12 일에 Cuomo 주지사는 필수 사업체에 직장에 있는 직원을 위한 안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202.16 호를 발행했으며, 업무 중 고객 또는 대중의 일원과 직접 접촉할 때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2020 년 4 월 15 일에 행정명령 202.17 호를 발행하여 만 2 세 이상으로 의학적으로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천 안면 가리개로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2020 년 4 월 16 일 Cuomo 주지사는 만 2 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안면 가리개 착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 수단을 이용하거나 임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중 코와 입을 가리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2.18 호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에 승객이 있는 동안 코와 입을 덮는 안면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대중 또는 민간 교통의 모든 운영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에 Cuomo 주지사는 사업체 운영자/소유자가 안면 가리개 또는 마스크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입장을 거부할 재량을 승인하는 행정명령 202.34 호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4월 26일에 Cuomo 주지사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뉴욕의 산업과 사업체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에 주지사는 지역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 19 신규 감염과 건강 관리 시스템, 진단 검사, 접촉 추적 능력을 포함한 여러 공중보건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에 Cuomo 주지사는 지역별 계량 분석 및 지표에 근거하여 재개 1 단계가 2020년 5월 15일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에 Cuomo 주지사는 재개 3 단계가 주의 여러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며, 뉴욕 주민, 정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안전한 재개를 위해 바이러스가 억제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기 위해 주의 자료 수집 노력을 집계하는 새로운 조기 경고 대시보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11일에 Cuomo 주지사는 6월 12일부터 재개 3 단계가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표준을 따르는 것 외에도, 필수 및 비필수 사업체는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보건부 발행 지침 및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 문서의 지침이 뉴욕주에서 발행한 기타 지침 문서와 다른 경우에는 최신 지침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 뉴욕주 내 책임감 있는 프로 스포츠 훈련 활동에 대한 표준

다음과 같은 최소 주정부 표준 및 해당 연방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떠한 프로 스포츠 훈련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최소 기준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주정부 기준은 주정부가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운영하는 모든 프로 스포츠 훈련 활동에 적용됩니다. 시설 소유자/관리자 또는 시설 소유자/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두 경우 모두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표준을 충족할 것을 책임집니다.

다음 지침은 사람, 장소 및 절차의 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I. 사람

### A. 물리적 거리두기

- 책임 당사자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훈련, 치료 또는 작업에 대하여 총 점유 인원이 점유 허가에 설정된 특정 구역 최대 점유 인원의 **50%** 이하로 제한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또한 책임 당사자는 핵심 활동의 시행 또는 안전이 더 가까운 거리를 요구(예: 선수 치료)하지 않는 한 항상 개인 사이에 최소 **6 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개인은 다른 사람의 **6 피트** 이내에 들어가지 말 때마다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기치 않게 **6 피트** 이내에 들어오는 경우 개인은 안면 가리개를 쓸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면 가리개에는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천 기반 안면 가리개와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천, 일회용 또는 기타 수제 안면 보호대는 작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에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작업장 활동에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가 아닙니다. 이러한 활동의 경우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지침에 따라 정의된 대로 기존 산업 표준에 따라 사용되는 **N95 마스크** 또는 기타 개인 보호 장비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최소 **6 피트**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용 공간(예: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공용 실외 공간)에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함을 개인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 선수가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안면 가리개를 벗을 수 있지만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가 항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한 번에 연습실에 있는 선수 수에 대한 제한 또는 코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선수 수 제한(예: 농구팀의 경우 바스켓당 한 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일반적인 실내 또는 실외 좌석 공간을 폐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이 계속 열려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모든 방향(예: 좌우 및 서로 마주할 때)에서 최소 **6 피트** 떨어져 있도록 좌석 공간 배치(예: 의자, 테이블)를 변경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모든 방향(예: 좌우 및 서로 마주할 때)에서 최소 **6 피트** 이상 떨어져 있고 사용 사이에 청소 및 소독 없이 워크스테이션을 공유하지 않도록 직원 및 선수를 위한 워크스테이션 또는 좌석 구역의 사용을 수정 및/또는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선수가 같은 방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예: 운동 장비, 치료 테이블), 사용 중인 시설은 서로 최소 **12 피트**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워크스테이션 또는 시설 간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안면 가리개 또는 물리적 장벽(예: 공기 흐름, 난방, 냉각 또는 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안면 가리개를 대신하여 플라스틱 차폐벽)을 제공하고 사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을 사용하는 경우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지침에 따라 장벽을 배치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 옵션에는 스트립 커튼, 큐비클, 플렉시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또는 기타 불침투성 칸막이나 파티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작은 공간(예: 엘리베이터, 직원실, 라커룸)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단,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개인이 동시에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탑승자가 사용하도록 설계하지 않는 한 점유 공간이 공간 또는 차량 최대 수용 인원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당사자는 안전 절차를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와의 환기를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예: 창문 및 문 열기). 책임 당사자는 엘리베이터 대기 구역에서의 모임을 방지하고 엘리베이터의 밀집도를 제한하기 위해 계단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가 시설 주변에서 차량(예: 골프 카트)을 사용할 때 모든 탑승자가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 한 각 차량에 한 명만 탑승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 필수 유지보수 직원(예: 관리인)이 사용하는 차량은 운전자가 항상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 공유될 수 있습니다.
    - 밀접한 접촉 또는 근접한 접촉을 제한하기 위해 유지관리 직원을 두 명/소규모 그룹에 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차량(예: 골프 카트, 관리인 차량)은 사용 후 다른 사람이 차량을 사용하기 전에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테이프 또는 화살표가 있는 표지판 등으로 좁은 통로, 복도, 공간에 양방향 도보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영역 또는 일반적으로 줄이

형성되거나 사람이 모이는 구역(예: 엘리베이터 입구, 에스컬레이터, 로비, 출퇴근 스테이션, 건강 선별 스테이션)에 6 피트의 공간을 나타내는 표지판 및 거리 마커를 게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설 전체에 보건부 코로나 19 표지판과 일치하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표지판이 부서의 표지판과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직장 또는 환경에 맞는 자체 맞춤형 표지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은 개인에게 다음을 상기시키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마스크나 천 안면 가리개로 코와 입을 가립니다.
  - 개인 보호 장비를 제대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하십시오.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코로나 19 에 대한 증상이나 노출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 손 위생과 세척 및 소독 지침을 따르십시오.
  - 적절한 호흡기 위생과 기침 에티켓을 따르십시오.

## B.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 책임 당사자는 대면 모임(예: 직원회의, 코칭 보고 받기)을 제한하고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 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체 및 운영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Businesses and Employ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 동영상이나 화상회의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상회의 또는 통신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통풍이 잘되는 열린 공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이 서로 6 피트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예: 의자가 있는 경우, 의자 사이에 공간을 두고 개인이 의자를 하나씩 띄어 앉게 함).
- 책임 당사자는 모임을 촉발하거나 접촉이 많은 불필요한 편의 시설 및 공동 구역(예: 자동판매기, 공용 커피 머신, 클럽 하우스)을 폐쇄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접촉이 적거나 접촉이 없는 전용 공간(예: 지정된 방 안, 테이블 위에 간격을 두고 배치)에서 선수에게 개별 병에 담긴 음료와 일회용 식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한 명의 선수만 공간에 존재해야 하며, 방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선수는 서로 6 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방에 물품을 다시 채워야 하는 선수 및 개인은 입장 전후에 손 위생을 수행하고 방에 있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이나 라커룸과 같은 좁은 지역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하기 위한 관행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점유량을 제한하기 위한 적절한 표지판과 시스템(예: 사용 중 표시)을 시행해야 합니다.
- 또한 책임 당사자는 선수 및 직원들이 모임(예: 휴식 시간, 식사, 교대근무 시작/중지) 시 사회적 거리두기(즉, 6 피트 공간)를 관찰할 수 있도록 일정을 교대로 배치해야 합니다.
- 필수적이지 않은 공동 구역(예: 건식 사우나, 스팀 룸, 냉수 욕조, 산소 또는 냉동 요법실)은 닫혀 있어야 합니다.

## C. 직장 활동

- 팀 시설에서는 개별 운동만 허용됩니다. 단체 활동(예: 스크럼, 즉석 게임)은 금지됩니다.

- 코칭은 진행할 수 있지만 코치는 항상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책임 당사자는 선수와 직원 간의 접촉 수를 줄이기 위해 선수당 코치/트레이너를 하나씩 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별 팀 스태프들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그러한 직원이 치료의 수준에 따른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도록 보장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팀이 훈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예: 골프 코스에서 벙커 레이크 없애기, 클레이 테니스장의 단장 횡수 줄이기).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인 접촉 및 모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직원 또는 개인 훈련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팀 멤버 및 코치만 있도록 제한
  - 시설 시간 조정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수용하기 위해 현장 인력 및 선수 줄이기
  - 교대근무 설계(예: A/B 팀, 도착/출발 시간 교차)
  - 사회적 거리두기를 허용하는 활동(예: 체력 단련 훈련, 호스(HORSE))을 허용하지 않는 활동(예: 1대 1, 5-3-1)보다 우선하기
  - 예정된 활동 및 연습을 교대로 배치하고 한 지역에서 여러 선수/스태프가 훈련하는 것을 피하고 점유 지역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사용 및/또는
  - 새로운 규칙과 관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로 복귀하기 전에 선수 및 필수 직원을 위한 원격 교육 회의를 실시

#### D. 이동 및 상업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시설에 필수적이지 않은 방문자가 입장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픽업 및 배달을 위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상호작용(예: 훈련 후 떠나는 개인의 출구 및 시작하는 개인을 위한 별도의 입구 지정) 및 이동(예: 선수는 가장 적은 수의 필요한 시설을 사용해야 함)을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화재 안전 규정을 준수하면서 (1)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방문자의 흐름을 관리하고 (2) 아래 섹션 III의 "절차" 하위 섹션 A "선별 및 검사"에 설명된 대로 건강 선별을 촉진하기 위해 입구의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용 가능한 경우 선별을 위해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 줄을 설 때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 II. 장소

### A. 보호 장비

- 책임 당사자는 특정 직장 활동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뿐만 아니라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조달, 제작, 또는 기타 방식으로 획득하고 직장에서 직원, 선수 또는 팀 스태프에게 비용 없이 그러한 가리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이 교체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안면 가리개, 마스크 및 기타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적절히 공급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에는 천(예: 수제 봉제, 임시 가리개, 두건),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및 안면 보호대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안면 가리개는 사용 후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천 안면 가리개 및 기타 유형의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청소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천 안면 가리개 또는 일회용 마스크는 안면 가리개 요구사항에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직장 활동에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특정 활동에 N95 마스크가 전통적으로 필요한 경우 천이나 수제 마스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안전 장비에 대한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가 자신의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가 자신의 안면 가리개를 스스로 공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추가 보호 가리개(예: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또는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또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책임 당사자가 업무 성격으로 인해 직원 및 계약자들에게 더 보호가 잘되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고용주는 적용 가능한 모든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 보호 장비를 적절하게 착용하고, 벗고, 청소(해당하는 경우)하고,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를 교육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에게 엘리베이터, 로비 및 시설 주변을 다닐 때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사무실 업무 공간 지침(Office Workspaces Guidelines)을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가 6 피트 거리 내에서 물리적 장벽(예: 플렉시 유리) 없이 서로 및/또는 다른 개인과 상호 작용할 때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접수처 및 보안 데스크에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의 섹션 I "사람"의 하위 섹션 A "물리적 거리두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물리적 장벽(예: 플렉시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을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지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안전상 허용되는 한 장비, 컵, 자재 및 차량과 같은 물체의 공유뿐만 아니라 터치스크린과 같은 공유 표면의 접촉을 제한할 조치를 마련하거나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가 공유 물체 또는 접촉이 잦은 표면을 만질 때 실현 가능한 경우 장갑(업계에 적합한 또는 의료용)을 착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는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가 접촉 전후에 손 위생을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B. 위생,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민간 및 공공시설 청소 소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및 해당되는 경우 "[확산 방지](#)"(STOP THE SPREAD) 포스터를 포함하여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보건부가 권고하는 위생 및 소독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의 날짜, 시간 및 범위를 포함하는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현장에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용: 비누, 흐르는 따뜻한 물, 일회용 종이 타올 및 비닐 등을 씌운 쓰레기통
  - 손 소독용: 손 씻기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실행 불가능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최소 60%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
  - 건물의 공용 구역(예: 로비)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독제는 입구, 출구, 엘리베이터 및 보안/접수 데스크와 같은 편리한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비접촉식 손 소독제 디스펜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을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함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손 소독제 스테이션 근처에 놓습니다. 손 소독제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 개인 보호 장비를 포함한 더러워진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건물 주변에 쓰레기통을 놓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되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위해 적절한 청소 및 소독 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가 이러한 표면 사용 후에도 제조업체의 사용 지침에 따라 이러한 용품을 사용하고 손 위생을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접촉이 잦은 표면 및 흡수성 물품(예: 천 운동 밴드, 로프)은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엄격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적어도 각 운동 또는 연습, 최소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시행해야 합니다. 시설 청소 및 소독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보건부의 "코로나 19 대비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의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보장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사용 빈도에 따라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화장실 수용 인원을 줄이기 위해 표지판, 사용 중 표시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에 따라 세탁이 필요한 품목을 가장 따뜻한 적절한 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최소한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가 연습 시설 또는 워크스테이션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장비 또는 도구 세트로 이동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등록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장비와 도구를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코로나 19에 효과적인 것으로 뉴욕주에 등록되고 환경보호국이 확인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 상품을 세척하거나 소독하거나 청소 및 소독하는 행위로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재료 또는 기계를 손상시키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용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손 위생 스테이션 및/또는 일회용 장갑을 제공 및/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직원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 중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노출된 구역의 청소 및 소독을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청소 및 소독은 최소한 모든 이동이 많은 구역을 포함한 자주 접촉하는 표면(예: 엘리베이터, 로비, 건물 입구, 신분증 스캐너, 화장실, 난간, 손잡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시설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람이 사용한 영역을 폐쇄합니다. 영향을 받은 구역은 폐쇄하고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 해당 개인이 사용한 공유 건물 공간(예: 엘리베이터, 로비, 야외 공용 구역)도 폐쇄,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개인에 대한 정보를 건물 내 공간을 점유한 모든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즉시 전달하고, 어떤 공용 공간이 폐쇄되고 다시 열리면 이를 알려야 합니다.
-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해당 지역의 공기 순환을 늘립니다.
-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24시간 기다리십시오. 24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면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리십시오.
- 사무실, 화장실, 공용 구역 및 공유 장비와 같이 코로나 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가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구역을 적절하게 청소하고 소독하면 사용을 위해 다시 열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과 밀접히 또는 근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는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작업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밀접 또는 근접" 접촉에 관한 정보는 보건부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공무원 및 민간 직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하십시오.
- 코로나 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가 방문하거나 시설을 이용한 후 7일을 초과하여 지났을 경우 추가 청소 및 소독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청소 및 소독은 계속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 음식 및 음료(예: 뷔페 스타일 식사)를 금지하고, 집에서 점심을 가져오도록 권장하며, 식사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선수와 코치 간에 개인 물품(예: 타올, 음료용 컵, 물병, 의류)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훈련 시설의 요소를 조정하여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접촉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예: 쉽게 공을 회수할 수 있도록 채워진 골프 홀).

### C. 단계적 재개

- 책임 당사자는 생산 또는 작업 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기 전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운영 변경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첫 재개 시 직원, 선수, 팀 멤버 수 및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D. 의사소통 계획

- 책임 당사자는 주가 발행한 산업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시행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를 위해 적용 가능한 지침, 교육, 표지판 및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관된 수단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페이지, 문자 및 이메일 그룹, 소셜 미디어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구두 의사소통 및 표지판을 통해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개인이 개인 보호 장비, 특히 안면 가리개에 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보건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개인에게 상기시키도록 건물 안과 밖에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팀 관리와 협력해 건물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필수 방문자의 목록을 받습니다.

### III. 절차

#### A. 선별 및 검사

- 책임 당사자는 시설로 처음 복귀하기 전에 모든 선수, 팀 스태프 및 시설 직원을 검사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일 건강 선별 관행을 시행해야 합니다.
  - 선별 관행은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 출근 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수행(예: 전화 또는 전자 설문 조사)할 수 있으며, 또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선별이 완료되기 전에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가 서로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선별을 조정해야 합니다.
  - 최소한 모든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a) 알면서 지난 14 일 동안 최근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이었던 자 또는 코로나 19 증상이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함.
    - (b)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 및/또는
    - (c)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의 증상이 있었음.
- 책임 당사자는 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팀 매니저와 조정해야 합니다. 선별 모범 관행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공간 및 시설 구성이 허용한다면, 코로나 19 의심이나 확진 사례의 경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입구 또는 근처에서 개인을 선별합니다.
  - 개인이 선별 및/또는 건물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허용합니다.
  - 입주사와 협력하여 원격 선별을 완료한 개인을 확인합니다.
  - 입주사가 원격으로 선별하거나 도착 시 선별된 개인만 입장시키십시오.
  - 건물 입구에서 비접촉 열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을 식별하고 이차 선별 구역으로 안내하여 후속선별을 완료합니다.
- 코로나 19 와 관련된 증상에 대한 최신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 증상"(Symptoms of Coronavirus)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근무 시간 중 또는 근무 시간 외를 포함하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와 같은 앞에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변경되는 경우에 즉시 알리도록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선별 설문지 외에도 미국 고용 평등 기회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보건부 지침에 따라 매일 체온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 건강 자료(예: 체온 자료)의 기록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체온 점검을 포함한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가 현장에 진입하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직원 또는 참가자에 대한 노출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보건부 및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절차에 익숙한 고용주가 식별한 개인에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별 담당자는 최소한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받고 사용해야 하며 여기에는 장갑, 가운 및/또는 안면 보호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증상에 양성으로 선별된 직원, 선수 또는 팀 스태프는 훈련 시설로 들어가는 안 되며, 진단 및 검사를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라는 지침을 동반하여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의료 및 검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코로나 19 의심자나 확진자로 확인된 후 또는 코로나 19에 걸린 사람과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한 후 직원이 작업장에 돌아가려는 경우의 절차 및 정책에 대해 보건부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공무원 및 민간 직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선별 절차에서 수집한 모든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 응답을 매일 검토하고 해당 검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설문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가 나중에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발생하면 알릴 당사자 연락처를 식별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를 위해 현장 안전 계획의 모든 측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등의 책임을 지는 현장 안전 모니터 요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 양성 사례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현장 안전 모니터 요원은 양성 사례자와 공간을 공유하는 모든 영향받은 자의 접촉과 완료된 각 세척 및 소독 절차를 통보해야 합니다.
  - 현장 안전 모니터 요원은 모든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의 설문지를 수령하고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연락처는 설문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나중에 직원, 선수, 팀 스태프가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알릴 당사자로도 식별됩니다.
- 가능한 한, 책임 당사자는 업무 장소 또는 구역에서 다른 개인과 밀접 또는 근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일지를 유지하며,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이용해 또는 비접촉 수단을 통해 수행되는 배달은 제외합니다. 일지에는 직원, 선수 및 팀 스태프가 코로나 19로 진단될 경우 모든 접촉을 식별, 추적 및 통보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의 접촉 추적 노력에 협력해야 합니다.

## B. 추적

- 책임 당사자는 시설 직원, 선수 또는 팀 스태프가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임을 알리면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안전 계획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 등을 담당하는 현장 안전 모니터 요원을 지정합니다.
- 직원, 선수 또는 팀 스태프가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책임 당사자는 직장의 모든 접촉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주 및 지역 보건부와 협력해야 하며, 시설이 위치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해당 직원, 선수 또는 팀 스태프가 처음 코로나 19 증상을 느끼거나 양성으로 검사받은 시점(둘 중 이른 시점) 전 48 시간 이내에 현장에 들어온 모든 개인을 통보해야 합니다. 연방 및 주의 법과 규정의 요구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직원, 선수 또는 팀 스태프가 직장 내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건물 내 공간을 점유하는 모든 독립체에 건물 전체에서 해당 개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즉시 알려주고 증상이 있는 직원, 선수 또는 팀 스태프가 검사 결과 양성이라면 통보해야 합니다.
- 주 및 지역 보건부는 그들의 법적 권한에 따라 자택 격리 또는 검역을 포함하여 감염되거나 노출된 사람의 모니터링 및 이동 제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에 걸린 사람과 밀접한 또는 근접한 접촉을 했다고 경고받고 추적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경고를 받은 개인은 경고 시점에 고용주에게 자가 보고해야 하며 위에 언급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IV. 고용주 계획

책임 당사자는 작성된 안전 계획을 현장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사업체 소유자 및 운영자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안내하는 사업체 재개 안전 계획 템플릿을 제공했습니다.

추가 안전 정보, 지침 및 자료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아래 링크에서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귀하의 의무를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